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27호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임실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사업, 교육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8조)
마. 중복지원 금지 및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임실군 청년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며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제조·가공·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방향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영농기술 습득과 농촌사회 정착·융화 지원방안

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금 지원
2. 농기계 및 창고 등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로 지원사업
3. 영농 자재 지원
4.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5. 브랜드 개발, 쇼핑몰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종규의원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

자 · 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